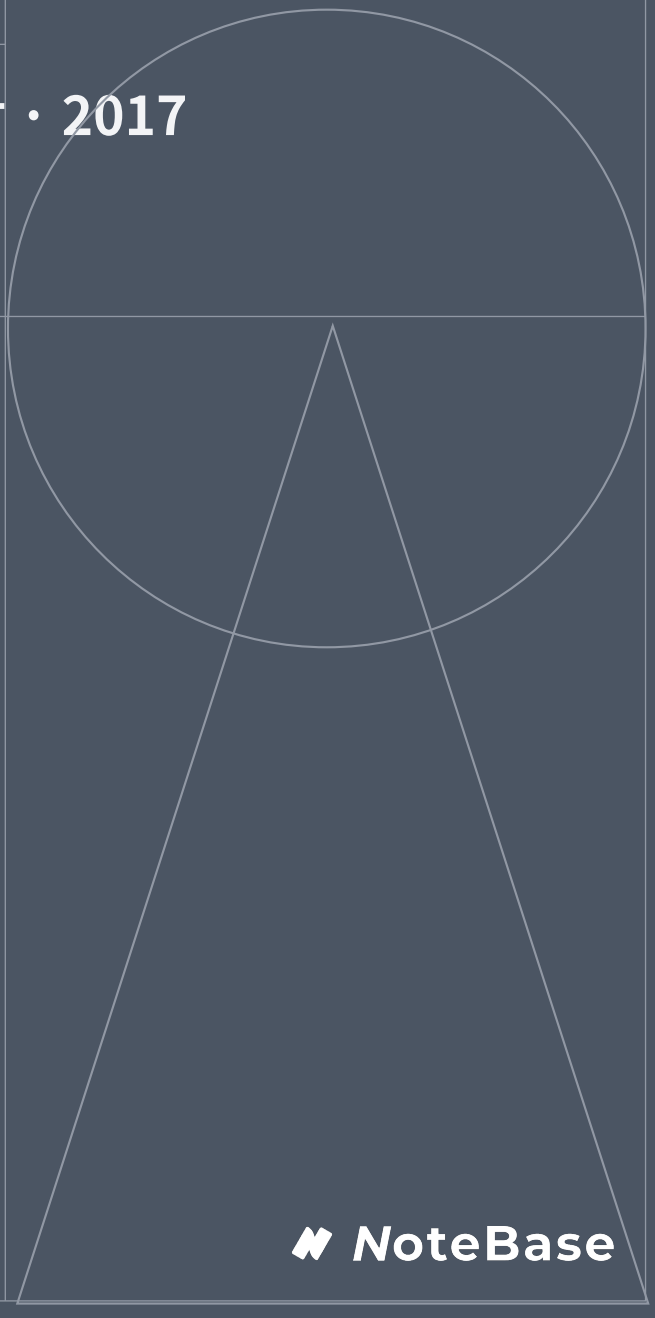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17

문 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는?

① 덤핑방지관세

② 상계관세

③ 일반특혜관세

④ 할당관세

정답 3번

쟁점

관세법상 여러 종류의 특수관세(탄력관세) 가운데, 선진국(공여국)이 개발도상국(수혜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관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각 관세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부과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일방적·비상호적으로 부여하는 특혜관세이다. 관세법상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편익관세·특혜관세)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핵심 구분

부과 목적으로 갈린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팔거나(덤핑)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추가로' 세율을 얹는 규제관세(세율 인상). 할당관세=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물량 이내에 세율을 내리거나 물량 초과분에 세율을 올리는 관세(가격안정·산업지원 목적).
일반특혜관세=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특혜관세.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원 + 세율 인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일반특혜관세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덤핑방지관세: X. 수출국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출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그 차액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여' 부과하는 규제관세이다.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며 개발도상국 지원과 무관하다. '낮은 세율' → '기본세율에 추가 부과(세율 인상)'.
② 상계관세: X. 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그 보조금 상당액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부과하는 규제관세이다. 이 역시 세율 인상이며 개발도상국 지원 목적이 아니다. '낮은 세율' → '보조금 상당액 추가 부과(세율 인상)'.
③ 일반특혜관세: O.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공업화를 지원하는 특혜관세로,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할당관세: X. 특정 물품의 수급 안정이나 산업 지원을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로, 대상이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이 아니라 '물량(수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개발도상국 지원' → '수량 기준의 수급 조절'.

오답 포인트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는 이름만 보면 개발도상국과 무관해 보이지만 '불공정 수입에 대응해 세율을 올린다'는 방향을 기억하면 세율을 낮추는 발문과 정반대임을 바로 알 수 있다. 할당관세도 세율을 낮추는 국면이 있어 헷갈리기 쉬우나, 기준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 수량'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라는 두 표현이 함께 나오면 일반특혜관세(GSP)로 곧바로 확정한다. 반대로 '덤핑', '보조금', '국내산업 피해' 같은 말이 나오면 세율을 더하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이고, '일정 수량', '물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할당관세이다.

암기 포인트

세율을 '내리는' 지원성 관세=일반특혜관세(개발도상국 지원)·할당관세(수급 조절, 수량 기준). 세율을 '올리는' 규제성 관세=덤핑방지관세(덤핑 대응)·상계관세(보조금 대응). '개발도상국+세율 인하'는 일반특혜관세 하나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2. 무역 거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번변경기준

② 부가가치기준

③ 가공공정기준

④ 완전생산기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 체계에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원산지 판정은 크게 두 가지 기본원칙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물품이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채취·가공된 경우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한 물품(즉 원재료나 부품이 여러 나라에서 조달되어 최종적으로 가공·제조된 물품)에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이다. 이 문제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하위 세부기준 3가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와 완전생산기준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개념

완전생산기준=하나의 국가에서 원재료 채취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본원칙이다. 실질적 변형기준=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한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HS 품목분류상 다른 세번으로 변경되거나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창출되는 등)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그 세부 판정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HS 품목분류상 세번이 변경되었는지), 부가가치기준(제조·가공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지), 가공공정기준(특정한 주요 공정을 수행하였는지)의 세 가지가 함께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세번변경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 판정방법 중 하나이므로 해당한다(오답 대상 아님).
② 부가가치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 판정방법 중 하나이므로 해당한다(오답 대상 아님).
③ 가공공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 판정방법 중 하나이므로 해당한다(오답 대상 아님).
④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하위 기준이 아니라 이와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기본원칙이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찾는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하나의 위계(완전생산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로 잘못 이해하면 ④를 실질적 변형기준의 일종으로 오인해 다른 선지를 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생긴다. 두 기준은 적용 대상(단일국 생산 vs 다국 관여 생산)이 다른 별개의 판정원칙임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산지 결정기준 문제는 먼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큰 틀에서 나누고, 실질적 변형기준 안에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의 세 세부기준이 들어간다는 구조를 떠올린다. 보기 중 이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항목(완전생산기준)을 골라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원산지 결정 2대 원칙: 완전생산기준(단일국 전체생산) / 실질적 변형기준(다국 관여, 세부 3가지=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으로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3. 독자적인 개발력과 생산기술을 갖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담당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의 상표로 수출하는 방식은?

① Turn Key Contract

② Franchise

③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④ Licensing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조업자가 단순 생산·조립만 담당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설계·디자인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국제 생산·계약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발문의 핵심은 '독자적인 개발력과 생산기술', '연구개발·설계·디자인까지 담당', '주문자의 상표로 수출' 세 가지 조건이다.

핵심 개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가 제공한 설계·사양대로 제조업자가 단순 생산만 담당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방식이다. ODM(제조업자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은 제조업자가 자체적인 연구개발·설계·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제품 개발까지 주도한 뒤, 완성된 제품을 주문자의 상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OEM은 '생산만', ODM은 '개발+생산'을 제조업자가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Turn Key Contract(턴키 계약)는 플랜트 수출 등에서 설계·시공·기계설치·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해 완성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상표 부착 수출과는 무관하다. → 지문과 불일치.
② Franchise(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상표·경영노하우·운영시스템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제조업자의 연구개발·생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지문과 불일치.
③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ODM)은 제조업자가 독자적인 개발력과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설계·디자인까지 직접 수행하여 제품을 완성한 뒤, 이를 주문자의 상표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답이다.
④ Licensing(라이선싱)은 상표권·특허권·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 상대방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 지문과 불일치.

NoteBase

오답 포인트

OEM과 ODM을 혼동하기 쉬운데, 발문에서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담당'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제조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는 ODM이다. 만약 발문이 주문자가 설계·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자는 그대로 생산만 한다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OEM에 해당하므로,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서 '주문자가 설계·사양 제공, 제조업자는 생산만'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OEM,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설계·디자인까지 자체 수행'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ODM으로 즉시 판단한다. 턴키 계약·프랜차이즈·라이선싱은 각각 플랜트 일괄 인도, 상표·경영노하우 제공, 무형자산 사용권 허여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상표 부착 수출 방식과 구분해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OEM=주문자 설계, 제조업자는 생산만(Original Equipment). ODM=제조업자가 개발까지(Original Development). 앞글자 E(Equipment=설비/생산)와 D(Development=개발)의 차이로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4. 국제마케팅믹스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제품전략

② 국제인사관리전략

③ 국제유통전략

④ 국제촉진전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마케팅믹스(International Marketing Mix)를 구성하는 4가지 전략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주에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마케팅믹스는 전통적으로 4P, 즉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촉진(Promotion)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를 국제시장에 적용한 것이 국제마케팅믹스이며,
국제제품전략·국제가격전략·국제유통전략·국제촉진전략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제인사관리전략은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사업장의 인력 채용·배치·교육 등을 다루는 국제인적자원관리(IHRM)의 영역으로,
마케팅믹스가 아닌 별도의 국제경영 기능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제품전략: 제품(Product) 요소에 해당하므로 국제마케팅믹스에 포함된다.
② 국제인사관리전략: 마케팅믹스 4P(제품·가격·유통·촉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이므로 국제마케팅믹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이다.
③ 국제유통전략: 유통(Place) 요소에 해당하므로 국제마케팅믹스에 포함된다.
④ 국제촉진전략: 촉진(Promotion) 요소에 해당하므로 국제마케팅믹스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4P의 한 요소를 그대로 국제화한 명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헷갈리지 않지만, ②는 가격(Price) 전략과 혼동하여 '이것도 마케팅믹스 어딘가에 속하겠지'라고 넘겨짚기 쉽다. 인사관리는 조직·인력을 다루는 기능이지 제품·가격·유통·촉진처럼 시장에 제공하는 요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가격전략'이 빠져 있고 대신 낯선 전략명(예: 인사관리·재무·생산 등)이 들어 있다면, 그 전략명이 제품·가격·유통·촉진 4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능임을 확인하여 정답으로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제마케팅믹스 = 국제제품전략 + 국제가격전략 + 국제유통전략 + 국제촉진전략(4P). 인사관리·재무·생산 등은 마케팅믹스가 아니다.

NoteBase

문 5.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와 정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구분	형태	정의
㉠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서비스 공급 형태를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네 가지 모드(mode)로 구분한다. 이 문제는 각 모드의 명칭(국문·영문)과 그 정의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표에서 형태 이름과 정의를 뒤바꿔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각 모드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옳게 짝지어진 하나를 골라낼 수 있다.

NoteBase

핵심 개념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모드1) -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자국에 머문 채 서비스 자체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예: 해외 고객에게 인터넷으로 컨설팅을 제공)이며,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2) - 서비스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국으로 이동하여 그 나라 안에서 소비행위를 완성하는 경우(예: 해외여행 중 현지 호텔 이용)이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가 있는 나라(서비스 수입국) 안에 지사나 자회사 등 사업체를 설립하여 그 안에서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예: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개설)이다.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모드4) - 서비스 공급 인력이 자연인 신분으로 서비스 수입국에 직접 입국하여 주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외국 기술자의 파견 근무)이며, 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ㄱ - 표의 ㄱ은 형태를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라고 해 놓았지만, 정의는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연인의 주재(모드4)에 대한 정의이므로 형태와 정의가 어긋난다. 틀린 짝짓기 → 옳은 정의는 소비자가 공급국으로 이동해 그 나라에서 소비를 완성하는 경우이다.
② ㄴ - ㄴ은 형태를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고 해 놓았지만, 정의는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이는 해외 소비(모드2)에 대한 정의이므로 형태와 정의가 어긋난다. 틀린 짝짓기 → 옳은 정의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나라에 사업체를 설립해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이다.
③ ㄷ - ㄷ은 형태를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라고 해 놓았지만, 정의는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이는 상업적 주재(모드3)에 대한 정의이므로 형태와 정의가 어긋난다. 틀린 짝짓기 → 옳은 정의는 공급 인력이 자연인으로서 수입국에 주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④ ㄹ - ㄹ은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고 해 놓았고, 정의는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이는 국경간 공급(모드1)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옳은 짝짓기이다.

오답 포인트

표의 네 항목 중 ㄱ, ㄴ, ㄷ은 형태 이름과 정의가 한 칸씩 밀려서 서로 뒤바뀌어 있다(ㄱ의 정의는 실제로 ㄷ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주재 정의이고, ㄴ의 정의는 실제로 해외 소비 정의이며, ㄷ의 정의는 실제로 상업적 주재 정의이다). 이런 함정에서는 형태 이름만 보고 익숙하다고 답을 고르면 안 되고, 정의 문장을 하나하나 실제 모드 개념과 대조해야 한다. 오직 ㄹ만 형태와 정의가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ATS 4대 공급형태 문제가 나오면 각 정의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 모드를 역으로 추적한다. "서비스만 이동, 생산요소 이동 없음"은 국경간 공급, "소비자가 이동해 소비를 완성"은 해외 소비, "공급자가 사업체를 설립"은 상업적 주재, "공급 인력(자연인)이 직접 이동해 주재"는 자연인의 주재로 즉시 판별한다. 짝짓기형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정의 문장의 서술 대상(누가 이동하는지, 무엇이 이동하는지)을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암기 포인트

GATS 4모드는 이동 주체로 구분한다: 모드1 국경간 공급 - 서비스만 이동, 모드2 해외 소비 - 소비자가 이동, 모드3 상업적 주재 - 자본(사업체)이 이동, 모드4 자연인의 주재 - 사람(공급 인력)이 이동.
"1서비스-2소비자-3자본-4사람"의 순서로 외워 두면 정의 문장만 보고도 모드 번호를 바로 매칭할 수 있다.

NoteBase

문 6.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경우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에 비록 각각 다른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증명된 때에는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될 수 있다.

③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는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해도 된다.

④ 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의 명시가 있는 경우 은행에 제시되는 운송서류에는 반드시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운송서류 관련 조항(분할선적 간주 여부, 환적 허용 요건, 항공운송서류 원본 제시 방법, 무사고 표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용장 실무에서 은행은 서류 문언만으로 일치성을 심사하므로, 각 조항이 요구하는 것이 실제 물품 상태가 아니라 서류상의 문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분할선적 간주 제외=동일한 운송수단·동일한 항해·동일한 목적지이면 선적일·선적항이 달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환적 허용=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해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면 환적 문구가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된다. 항공운송서류 원본=항공운송서류는 선하증권과 달리 여러 통의 원본이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해도 송화인(수출자)용 원본 한 통만 제시하면 된다. 무사고 표시=무사고 운송서류란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에 '무사고 본선적재'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서류에 실제로 clean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옳다.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동일한 항해를 통해 운송되고 운송서류에 동일한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옳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상에 증명되어 있으면, 환적될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 대상이 된다.
③ 옳다.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이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송화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하면 충분하다. 이는 항공운송서류가 선하증권처럼 여러 통을 동시에 유통시키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 → 이 선지가 정답이다. 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라는 명시가 있더라도, 운송서류에 반드시 clean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사고 운송서류는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조항이나 부기가 없는 서류를 의미할 뿐이고, cl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류상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오답 포인트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신용장 조건에 등장하면 운송서류에도 같은 단어가 그대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사고 여부는 서류에 물품·포장의 하자를 지적하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며, clean이라는 단어의 실제 기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①②③은 각각 분할선적 간주 제외, 환적 허용 예외, 항공운송서류 원본 제시 요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송서류 관련 지문에서 '반드시 ~라는 용어(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우선 의심한다. UCP 600은 서류의 실질적 내용(하자 문구의 부존재, 동일 목적지 명시 등)을 기준으로 삼지, 특정 단어의 문자적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clean(무사고) 표시는 단어 자체보다 하자 문구 부재 여부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암기 포인트

분할선적 간주 제외=동일 운송수단+동일 목적지(선적일·선적항 달라도 무방). 환적 허용 예외=컨테이너·트레일러·래쉬바지 선적이 선하증권에 증명되면 환적 문구 있어도 수리. 항공운송서류=원본 전통 요구되어도 송화인용 원본 1통이면 충분. 무사고 서류=clean이라는 단어 기재 여부가 아니라 하자 문구의 부존재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7. 2010년에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에 따를 때, 각 사건과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계정 항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구분	사건	국제수지 계정 항목
㉠	단기 외국인 노동자 국내유입의 증가	본원소득수지
㉡	해외유학이나 연수에 대한 수요 감소	이전소득수지
㉢	한국으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	자본수지
㉣	○○전자의 국제특허소송 패소로 과징금 부담	서비스수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2010년 개정된 IMF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 체계에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을 구체적 사건에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각 사건이 어느 계정에 기록되는지 하나씩 판정해야 한다.

핵심 개념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오가는 급료·임금(피용자보수)과 투자소득(이자·배당)을 기록한다. 이전소득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거래(송금, 기부, 벌금·과징금 등)를 기록한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유학연수 포함)·건설·지식재산권사용료 등 서비스 거래의 대가를 기록한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채무면제, 무상 자본재 이전 등)과 비생산·비금융자산(특허권 등 무형자산 그 자체의 매매, 토지 매매)의 거래만을 좁게 기록하며, 외국인직접투자나 증권투자·차입 등은 자본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에 기록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단기(1년 미만)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노동의 대가인 피용자보수로서 본원소득수지에 계상된다. 표의 대응이 옳다. (O, 정답)
② 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 관련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서비스수지(여행수지 중 유학연수 항목)에 해당한다. 대가 없이 이전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전소득수지로 짝지은 것은 틀린 대응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이전소득수지 → 서비스수지. (X)
③ ㄷ: 다국적기업이 한국 기업에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로서 BPM6에서는 금융계정에 기록된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이나 특허권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매매처럼 좁은 범위만 포함하므로, 직접투자를 자본수지로 짝지은 것은 틀린 대응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자본수지 → 금융계정. (X)
④ ㄹ: 국제특허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하는 과징금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지식재산권사용료)가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대가 없이 지급하는 벌과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이전소득수지에 해당한다. 대가가 수반되는 서비스 거래가 아니므로 서비스수지로 짝지은 것은 틀린 대응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서비스수지 → 이전소득수지. (X)

오답 포인트

②는 유학·연수비를 대가 없는 송금으로 착각해 이전소득수지로 고르기 쉽지만, 교육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서비스수지이다. ③은 자본수지라는 이름 때문에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자본수지로 오인하기 쉬운데, BPM6에서 자본수지는 매우 좁은 범위(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 매매)만 포함하고 직접투자·증권투자는 금융계정 소관이다. ④는 특허라는 단어에 이끌려 지식재산권사용료(서비스수지)로 오인하기 쉬우나, 과징금은 사용료 대가가 아니라 무상 이전이므로 이전소득수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 문장에서 먼저 '대가가 오가는 거래인지, 대가 없이 이전되는 거래인지'를 구분한다. 대가가 있으면 상품·서비스수지 또는 소득수지(노동·자본의 대가) 중 무엇인지 따지고, 대가가 없으면 이전소득수지나 자본이전(자본수지)인지를 따진다.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본수지가 아니라 대부분 금융계정임을 먼저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본원소득수지=급료·임금+투자소득(이자·배당), 이전소득수지=대가 없는 무상거래(송금·기부·벌금·과징금), 서비스수지=운송·여행(유학연수)·건설·지식재산권사용료 등 서비스 대가,
자본수지=자본이전+비생산·비금융자산 매매(좁음), 직접·증권투자·차입=금융계정(자본수지 아님)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8. 다음 표는 A, B 두 국가가 재화 X, Y를 1단위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각 국가의 비교우위와 세계시장에서의 X재의 상대가격P^W의 범위로 옳은 것은?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다)

	A국	B국
X재	2	1
Y재	3	2

①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frac{1}{2} \leq P^W \leq \frac{2}{3}$이다.

②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q \frac{2}{3}$이다.

③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q \frac{3}{2}$이다.

④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leq \frac{1}{2}$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리카도의 비교우위 모형에서 각국의 재화별 노동투입량으로 기회비용(상대가격)을 계산하여 어느 나라가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지 판정하고, 자유무역이 성립하는 세계 상대가격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므로 각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자체가 곧 생산비용이다. A국은 X재 2, Y재 3의 노동이 필요하고 B국은 X재 1, Y재 2의 노동이 필요하다. 비교우위는 절대적인 노동투입량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판정한다.

사용할 공식

X재의 기회비용(=국내 상대가격) = X재 노동투입량Y재 노동투입량 이며, 이는 X재 1단위를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을 뜻한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세계 상대가격 P^W는 두 나라의 국내 상대가격(기회비용) 사이의 값으로 결정된다.

계산 과정

A국의 X재 기회비용은 $\frac{2}{3}$이고, B국의 X재 기회비용은 $\frac{1}{2}$이다. $\frac{1}{2} < \frac{2}{3}$이므로 B국이 X재를 상대적으로 더 싸게(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하며, 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A국은 상대적으로 Y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무역이 성립하려면 세계 상대가격 P^W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frac{1}{2} \leq P^W \leq \frac{2}{3}$가 된다. 이 범위 밖이면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유리해져 무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frac{1}{2} \le P^W \le \frac{2}{3}$이다 → O. A국의 X재 기회비용(2/3)이 B국(1/2)보다 크므로 A국은 상대적으로 Y재 생산에 유리하고, 세계 상대가격도 계산과 일치한다.
②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 \frac{2}{3}$이다 → X. B국은 Y재가 아니라 X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상대가격 범위도 틀렸다.
③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 \frac{3}{2}$이다 → X. A국은 X재가 아니라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상대가격 범위도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le \frac{1}{2}$이다 → X. B국이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판정은 맞지만, 상대가격 범위가 틀렸다. 올바른 범위는 $\frac{1}{2} \le P^W \le \frac{2}{3}$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비교우위 판정은 맞으면서 상대가격 부등호 범위만 틀리게 만들어 헷갈리기 쉽다. 세계 상대가격은 어느 한쪽 국가의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아니라,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 구간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또한 비교우위는 노동투입량의 절대적 크기(A국이 두 재화 모두 노동을 더 많이 씀)가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의 상대적 기회비용 비교로 판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를 보면 먼저 각국의 X재 기회비용(X재 노동투입량 ÷ Y재 노동투입량)을 각각 구한다. 그 값이 더 작은 나라가 X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나머지 나라는 자동으로 Y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세계 상대가격의 범위는 두 기회비용 값을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나열한 구간이 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 판정은 절대적 노동량이 아니라 국내 기회비용(상대가격) 비교로 한다.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무역이 이루어지는 세계 상대가격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 구간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9.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용장에 개별품목 또는 포장단위로 수량을 명시하지 않고 환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이내의 수량 과부족은 허용된다.

② FAQ 조건은 외관상 잠재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출자가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③ GMQ 조건과 더불어 곡물류 거래에 활용되는 TQ 조건은 대표적인 양륙지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④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선적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하나의 할부선적분이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모든 할부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수량조건·품질조건·신용장 할부선적 조건이라는 무역실무상 기본조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각 조건의 명칭과 정의를 서로 뒤바꿔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한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량과부족 용인조건(M/L Clause)은 신용장에 개별품목이나 포장단위로 수량이 명시되지 않고 환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라 5% 범위 내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GMQ(판매적격조건)는 목재·냉동어류처럼 외관상 잠재적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품질조건이고, FAQ(평균중등품질조건)는 곡물 등 농산물에서 그 해 그 지역의 평균적 품질을 표준으로 삼는 조건이다. 품질결정시기 기준으로는 선적품질조건(TQ 등)과 양륙품질조건(GMQ, RT, FAQ 등)으로 나뉘는데, TQ(Tale Quale)는 선적 시의 품질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양륙 시의 변질에는 책임지지 않는 대표적 선적품질조건이다.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에서는 어느 한 회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그 신용장은 해당 회분과 그 이후의 모든 회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정상적으로 선적을 마친 이전 회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신용장에 개별품목이나 포장단위로 수량이 명시되지 않고 환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이내의 수량 과부족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수량과부족 용인조건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FAQ 조건은 외관상 잠재적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 등의 평균적인 중등품질을 기준으로 삼는 조건이다. 외관상 하자 확인이 어려운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은 GMQ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FAQ 조건 → GMQ 조건.
③ TQ 조건은 대표적인 양륙지 품질조건이 아니라 선적 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선적품질조건이다. 곡물류 거래에서 양륙지 품질조건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RT(호밀조건)나 FAQ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대표적인 양륙지 품질조건 → 대표적인 선적품질조건.
④ 할부선적 중 어느 한 회분이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신용장 전체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행이 발생한 해당 회분과 그 이후의 모든 회분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정상적으로 선적이 이루어진 이전 회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모든 할부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의 효력은 정지된다 → 불이행이 발생한 회분과 이후 회분에 한하여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오답 포인트

FAQ와 GMQ, TQ와 양륙품질조건은 이름과 정의가 서로 바뀌어 출제되는 대표적인 함정이다. 조건 이름만 보고 익숙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정의 문장이 실제 그 조건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를 짝지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할부선적 조항은 '전체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해당 회분 이후에 대한 효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범위를 넓혀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조건 문제는 먼저 그 조건이 선적품질조건인지 양륙품질조건인지를 구분한 뒤, 그 안에서 다시 명칭(FAQ/GMQ/TQ/RT 등)과 정의를 하나씩 짝짓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할부선적 조항이 나오면 '전체'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용장통일규칙은 이미 이행된 회분과 미이행 이후 회분을 구분해서 규율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량과부족 용인: 개별수량 미명시 + 환어음 총액이 신용장금액 이내 → 5% 과부족 허용.
FAQ=평균중등품질(곡물), GMQ=판매적격성 보증(잠재하자), TQ=선적품질조건의 대표 예. 할부선적 불이행 시 신용장 효력 상실 범위=해당 회분과 그 이후 회분에 한정.

NoteBase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청약이 된다.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상 승낙에 관한 조문(제19조~제22조)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특히 승낙기간 말일이 공휴일·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제20조 제2항)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 표현을 살짝 비틀어 틀린 선지를 만들었다.

용어 풀이

승낙(acceptance): 청약에 동의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로, 청약의 조건대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반대청약(counter-offer):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응답으로,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다.
연착된 승낙(late acceptance): 승낙기간이 지난 뒤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승낙을 말한다.

핵심 구분

승낙기간 말일이 공휴일·비영업일이어서 통지가 도달될 수 없는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제20조 제2항). 그 다음 날이 다시 공휴일·비영업일일 수 있으므로 '영업일'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다.
연착된 승낙의 유효화: 원칙은 무효이나,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알리면(구두 통지 또는 통지 발송) 예외적으로 승낙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제21조 제1항).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승낙을 의도하나 추가·제한·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② X: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비영업일을 기간 계산에 산입한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말일이 청약자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비영업일에 해당하여 도달될 수 없는 경우 '승낙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제20조 제2항은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라고 규정한다. '그 다음 날' →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로 고쳐야 옳다.
③ O: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제21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④ O: 승낙은 그 효력 발생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철회될 수 있다(제22조).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앞문장(공휴일·비영업일을 기간에 산입한다)이 맞기 때문에 뒤의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그냥 넘기기 쉽다. 그러나 협약은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므로, '날'과 '영업일'의 차이를 놓치면 틀린 선지를 옳은 것으로 오인한다. 다음 날이 또 공휴일이면 연장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영업일'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승낙 문제에서 기간 연장 선지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인지부터 확인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면 이 부분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선지는 제19조(반대청약), 제21조(연착 승낙의 유효화), 제22조(승낙의 철회) 조문과 대조하면 대부분 그대로 옳은 문장으로 출제된다.

암기 포인트

제19조: 변경 포함 응답 = 거절 + 반대청약.
제20조 제2항: 기간 중 공휴일·비영업일은 산입, 단 말일이 공휴일·비영업일이면 '그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
제21조: 연착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 취지 통지(구두 또는 발송)하면 효력.
제22조: 승낙은 효력 발생 전 또는 동시 도달 시 철회 가능.

NoteBase

문 11.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무역 지표는?

$\frac{\text{수출상품가격지수}}{\text{수입상품가격지수}} \times 100$

① 수출특화지수
② 현시비교우위지수
③ 산업내무역지수
④ 상품교역조건지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무역 관련 여러 지수(수출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상품교역조건지수) 가운데 제시된 공식이 어느 지수의 산출식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각 지수는 분자·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서로 다르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익혀 두어야 한다.

핵심 개념

상품교역조건지수(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frac{\text{수출상품가격지수}}{\text{수입상품가격지수}} \times 100$으로 구하며, 동일한 수량의 수출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기준 교역조건 지표이다. 이 값이 100보다 크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악화된 것이다.
수출특화지수는 $\frac{\text{수출액-수입액}}{\text{수출액+수입액}}$으로 특정 상품의 수출입 특화 정도를 본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나라 특정 품목 수출비중세계 전체 해당 품목 수출비중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한다.
산업내무역지수(그루벨-로이드 지수)는 $1-\frac{|\text{수출액-수입액}|}{\text{수출액+수입액}}$으로 같은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도를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출특화지수 →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출입 합계로 나누는 지수로, 가격지수의 비율이 아니라 금액(수량×가격) 기준 지수이므로 제시된 공식과 다르다.
② 현시비교우위지수 → 특정 품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세계 비중과 비교하는 지수로, 가격지수와는 무관하다.
③ 산업내무역지수 → 동일 산업 내 수출입 금액의 상대적 크기를 통해 산업내무역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로, 가격지수의 비율이 아니다.
④ 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상품가격지수를 수입상품가격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지수 모두 이름에 '지수'가 들어가고 무역 관련 지표라는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구분의 핵심은 분자·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가격지수인지 금액(수출입액)인지, 그리고 비교 대상이 국가 간(현시비교우위)인지 산업 내(산업내무역)인지, 수출입 방향(수출특화)인지이다. 제시된 공식은 오직 '가격지수 대 가격지수'의 비율이므로 가격 기준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상품교역조건지수만 해당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식에 '가격지수/가격지수 × 100' 형태가 나오면 곧바로 상품교역조건지수(순상품교역조건지수)를 떠올린다. 반면 공식에 수출액·수입액(금액) 차이나 비중이 들어가면 수출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중 하나이므로 그 세부 구조(차이/합, 국가 비중/세계 비중, 절댓값 차이)로 다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상품가격지수 ÷ 수입상품가격지수 × 100(가격지수의 비율).
수출특화지수·산업내무역지수는 수출입 금액의 차이와 합을 이용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품목별 수출 비중을 국가 대 세계로 비교한다는 점을 서로 짝지어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12. 펄뮤터(Perlmutter)가 분류한 국제화 진입방식에 따른 기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

② 자원시장중심형(resourcentric)

③ 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

④ 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펄뮤터(Perlmutter)의 EPRG 모델이 제시하는 경영자의 국제화 태도(orientation) 네 가지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EPRG는 각 유형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지역시장중심형(Regiocentric)·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은 본사가 있는 본국의 방식과 인력을 해외 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이다. 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은 각 현지국의 문화와 시장 특성을 존중하여 현지인 위주로 현지에 맞게 경영하는 태도이다. 지역시장중심형(regiocentric)은 여러 국가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어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이다. 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은 국적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최적의 인재와 자원을 전 세계에서 배분하는 태도이다. 이 네 유형은 모두 '시장'이 아니라 경영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지향점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자원(resource)'을 기준으로 한 유형은 펄뮤터의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 — O. 펄뮤터가 제시한 네 유형 중 하나로, 본국 중심의 경영방식을 해외에 이식하는 태도이다.
② 자원시장중심형(resourcentric) — X. 펄뮤터의 EPRG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펄뮤터의 네 유형은 본국중심(E)·현지중심(P)·지역중심(R)·세계중심(G)이며 '자원중심'이라는 유형은 없으므로 이 문제에서 찾는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다.
③ 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 — O. 펄뮤터가 제시한 네 유형 중 하나로, 현지국의 특성에 맞춰 현지 위주로 경영하는 태도이다.
④ 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 — O. 펄뮤터가 제시한 네 유형 중 하나로, 국적을 초월하여 전 세계 차원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펄뮤터의 EPRG 모델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이므로 소거된다. ②의 resourcentric은 얼핏 자원 확보를 중시하는 국제경영 전략처럼 들려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펄뮤터의 분류 체계 자체에 없는 조어라는 점에서 정답이 된다. EPRG에서 R은 '자원(resource)'이 아니라 '지역(region)'을 의미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펄뮤터 관련 문제는 EPRG 네 글자(Ethnocentric, Polycentric, Regiocentric, Geocentric)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네 유형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네 유형에 없는 이름(예: 자원중심형)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정답 후보가 된다.

암기 포인트

EPRG = 본국중심(Ethnocentric)·현지중심(Polycentric)·지역중심(Regiocentric)·세계중심(Geocentric). R은 자원(resource)이 아니라 지역(region)이라는 점을 특히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3. 기업의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싱은 잠재적 해외경쟁자에게 회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크다.

② 라이센싱은 해외시장에서 필요한 제조, 마케팅 그리고 전략에 대한 긴밀한 통제를 하기 쉽다.

③ 라이센싱은 무역 제한이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④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해외시장 진출방식 중 라이센싱(licensing)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라이센싱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상표, 기술, 노하우 등을 해외 현지기업(라이센시)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진출방식으로, 직접투자(해외자회사 설립)에 비해 자본투입과 위험부담은 작지만 그만큼 현지 사업활동에 대한 통제력도 약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라이센싱은 계약을 통해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넘기는 방식이므로, 라이센서(자사)는 현지 라이센시의 제조공정, 마케팅 활동, 경영전략에 직접 관여하거나 긴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력이 강한 진출방식은 합작투자나 단독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설립)이며, 라이센싱은 이들보다 통제력이 낮은 대신 진입비용과 위험이 적은 저관여·저통제 진출전략에 속한다. 다만 기술 사용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핵심 노하우가 라이센시(잠재적 경쟁자)에게 유출되어 향후 경쟁자로 성장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상대국의 수입제한이나 외국인 지분제한 등 무역·투자 장벽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며, 초기 투자 없이 로열티라는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갖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라이센싱은 자사의 기술적 노하우를 계약 상대방인 현지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그 기업이 기술을 습득한 뒤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거나 도중에 이를 활용해 독자적인 경쟁자로 성장할 위험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X — 라이센싱은 제조, 마케팅, 전략 등 현지 사업활동의 실행 주체가 라이센시이므로 라이센서인 자사가 이를 긴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를 하기 쉽다"는 설명은 라이센싱의 특성과 반대되며,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자회사 설립)나 완전소유 자회사 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③ O — 라이센싱은 현지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거나 소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계약만으로 진출하므로, 수입쿼터·관세 등 무역 제한이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과 같은 현지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O — 라이센시로부터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으므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라이센싱과 해외직접투자(자회사 설립)의 통제력 차이를 헷갈리는 데 있다. "통제를 하기 쉽다"는 표현만 보고 무조건 장점으로 여겨 옳은 설명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라이센싱은 계약을 통한 사용권 이전일 뿐 현지 경영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시장 진출방식 문제가 나오면 각 방식을 통제력과 위험(자본투입) 두 축으로 정리해 비교한다. 수출 < 라이센싱 < 합작투자 < 단독 해외직접투자 순으로 통제력과 자본투입·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구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통제가 쉽다/어렵다", "위험이 크다/작다" 같은 서술의 참·거짓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라이센싱=계약으로 기술·상표 사용권만 이전, 저투자·저위험·저통제. 장점: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안정적 로열티 수입, 무역·소유 제한 회피 수단. 단점: 현지 제조·마케팅·전략에 대한 직접 통제 불가, 잠재적 경쟁자 육성 위험.

NoteBase

문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느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한다.

①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②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③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④ 레온티에프(Leontief) 역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무역이론에서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의 실질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서술한 정의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정리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이다. 헥셔-올린 제1정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립진스키 정리, 레온티에프 역설은 모두 헥셔-올린 모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정리·현상이지만 각각 다루는 변수와 인과관계가 다르므로, 지문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정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한다는 정리이다. 즉 재화가격(투입물의 산출물 가격) 변화와 요소가격(생산요소의 실질보수) 변화를 연결한다.
헥셔-올린 제1정리: 각국은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입한다는 정리이다. 요소부존과 무역패턴(수출입 구조)을 연결한다.
립진스키 정리: 재화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정리이다. 요소부존량 변화와 산출량 변화를 연결한다.
레온티에프 역설: 헥셔-올린 정리의 예측과 달리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한다는 실증적 관찰 결과이다. 이론적 정리가 아니라 현실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모순 현상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헥셔-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 X. 이 정리는 요소부존의 상대적 풍부함과 수출입 재화의 구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문이 말하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와 생산요소의 실질보수 변화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내용이다.
②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 O. 지문은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를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시킨다는 내용으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 X. 이 정리는 생산요소의 부존량 변화가 재화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것으로, 지문에서 말하는 재화가격 변화와 요소실질보수 변화의 관계와는 다른 내용이다.
④ 레온티에프(Leontief) 역설 → X. 이는 특정 정리가 아니라 헥셔-올린 정리의 예측이 실제 무역자료와 어긋난다는 실증적 발견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문에서 서술하는 가격-요소보수 관계와는 무관하다.

오답 포인트

헥셔-올린 모형 안의 네 가지 정리·현상을 이름만으로 암기하면 지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혼동하기 쉽다. 각 정리가 어떤 변수에서 출발해 어떤 변수로 귀결되는지를 짝으로 기억해야 한다. 특히 립진스키 정리는 요소부존량이 원인이고,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재화가격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다룬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그 결과로 생산요소의 실질보수 변화가 나오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이고, 생산요소의 부존량 변화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그 결과로 재화의 생산량 변화가 나오면 립진스키 정리이다. 요소부존의 상대적 풍부함과 무역패턴(수출입 구성)을 연결하는 서술이면 헥셔-올린 제1정리이고, 이론적 예측과 실제 무역자료의 불일치를 언급하면 레온티에프 역설이다.

암기 포인트

스톨퍼-사무엘슨: 재화가격 상승 → 그 재화에 집약적인 요소의 실질보수 증가,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 감소.
립진스키: 요소부존량 증가 → 그 요소에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량 증가, 다른 재화의 생산량 감소.
헥셔-올린 제1정리: 요소부존의 상대적 풍부함 →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의 수출.
레온티에프 역설: 헥셔-올린 정리의 예측과 실제 무역자료가 어긋나는 현상.

NoteBase

문 15. 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이 본사와 자회사 상호 간에 동종 또는 이종 통화표시 채권·채무를 차감한 후 차감 잔액만큼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위험 관리전략은?

① 가격정책(pricing policy)

② 선불과 지연(leading and lagging)

③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④ 네팅(nett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본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한 차액만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위험 관리기법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어는 '차감', '차감 잔액만큼 정기 결제'이며, 이는 다국적기업 내부 자금관리 기법 중 네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핵심 개념

네팅(netting): 본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들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동종 통화든 이종 통화든)를 그대로 결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하여 차액(차감 잔액)만 정기적으로 결제함으로써 결제 건수와 외환거래 규모를 줄이고 환위험 및 결제비용을 절감하는 기법이다. 양자 간 상계만 하면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 다수 관계회사의 채권·채무를 한 곳에서 집중 상계하면 다자간 네팅(multilateral netting)이라 한다.
리딩과 래깅(leading and lagging): 환율 변동을 예상하여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leading) 늦추는(lagging)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조정하는 기법이다.
스왑거래: 현재 시점에 외환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미래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 재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서로 다른 만기의 자금 수요·공급을 맞추거나 환위험을 헤지하는 파생상품 거래이며 채권·채무의 상계와는 무관하다.
가격정책: 수출가격이나 대금 결제통화, 가격 조건 등을 조정하여 환위험을 전가하거나 흡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채무 상계와는 별개의 접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격정책(pricing policy) — X: 수출입 가격이나 결제통화 조건을 조정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② 선불과 지연(leading and lagging) — X: 환율 전망에 따라 대금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으로, 채권·채무 자체를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지문의 '차감 후 잔액 결제'와 다르다.
③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 X: 현재와 미래 시점에 반대방향 외환거래를 동시에 약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본사·자회사 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내부 관리기법이 아니다.
④ 네팅(netting) — O: 본사와 자회사 상호 간의 동종 또는 이종 통화표시 채권·채무를 차감한 후 그 차감 잔액만큼만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기법으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리딩앤래깅과 네팅을 혼동하기 쉬운데, 리딩앤래깅은 '결제 시점'을 앞뒤로 조정하는 것이고 네팅은 '채권·채무 금액 자체'를 상계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스왑거래는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거래이고, 네팅은 그룹 내부(본사-자회사 간) 자금관리 기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채권과 채무를 차감(상계)한 후 그 잔액만 결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네팅을 떠올린다. 결제 '시점'을 조정한다는 표현이면 리딩앤래깅, 파생상품을 이용한 반대매매 약정이면 스왑거래, 가격이나 통화조건 조정이면 가격정책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네팅 = 상계 후 차액만 결제(금액 조정). 리딩앤래깅 = 결제 시점 조정. 스왑거래 = 현물·선물 반대매매 약정. 가격정책 = 가격·통화조건 조정.

NoteBase

문 16.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설정 방식은?

①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② 원가가산가격(cost-plus pricing)

③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

④ 단수가격(odd pricing)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신제품 도입 초기의 가격전략 중 초기고가전략(스키밍가격)의 개념과 그 반대전략인 시장침투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발문의 핵심 단서는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과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을 낮춤'이다.

핵심 개념

스키밍가격(초기고가전략)=신제품 출시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가격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혁신수용층 수요를 먼저 흡수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탄력성이 큰 다음 계층의 수요를 차례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점차 인하해 나가는 방식이다. 시장침투가격=반대로 신제품 출시 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짧은 시간에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한 뒤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다. 원가가산가격=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나 수요의 가격탄력성 활용과는 무관하다. 단수가격=1,000원 대신 990원처럼 단수(端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저렴하다는 심리적 인상을 주는 가격설정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 X: 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해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발문의 '초기 고가 → 점차 인하'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② 원가가산가격(cost-plus pricing) - X: 원가에 마진을 더하는 가격결정 방식일 뿐 시간 흐름에 따른 가격 인하나 수요의 가격탄력성 활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 - O: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탄력성이 큰 후속 수요층을 흡수하기 위해 가격을 점차 낮추어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단수가격(odd pricing) - X: 가격 끝자리를 단수로 표시해 심리적으로 저렴하게 느끼도록 하는 기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인하 전략과는 무관하므로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시장침투가격과 스키밍가격은 초기 가격 수준(저가 vs 고가)이 정반대이므로 두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원가가산가격과 단수가격은 '가격을 어떻게 계산·표시하는가'에 관한 기법이지 '시간에 따라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에서 애초에 발문의 논점과 범주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서 '초기 고가'와 '점차 인하'라는 두 단서가 동시에 나오면 스키밍가격, '초기 저가'와 '점차 인상'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시장침투가격으로 즉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스키밍(skimming)은 '위에서 걷어낸다'는 뜻으로 고가에서 시작해 위쪽 수요층부터 차례로 걷어낸다고 연상하면 시장침투가격과 헷갈리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Incoterms® 2010 규칙의 분류이다.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all mention of the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This more closely reflects modern commercial reality and avoids the rather dated image of the ris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

① ㉠ shipment, ㉡ carriers, ㉢ FCA, ㉣ premises

② ㉠ delivery, ㉡ carriers, ㉢ FCA, ㉣ premises

③ ㉠ shipment, ㉡ ports, ㉢ FAS, ㉣ ship's rail

④ ㉠ delivery, ㉡ ports, ㉢ FAS, ㉣ ship's rail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Incoterms® 2010은 적용되는 운송수단의 범위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규칙(EXW, FCA, CPT, CIP, DAT, DAP, DDP)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쓰는 규칙(FAS, FOB, CFR, CIF)이다. 이 문항은 후자 그룹의 정의와 그 안에 속하는 네 가지 규칙, 그리고 Incoterms 2010에서 달라진 위험이전 기준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그룹은 물품의 인도지점(point of delivery)과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목적지가 모두 항구(ports)라는 공통점 때문에 "sea and inland waterway" 규칙으로 불린다. 이 그룹에 속하는 규칙은 FAS, FOB, CFR, CIF 네 가지이다. 이 가운데 뒤의 세 규칙인 FOB, CFR, CIF는 Incoterms 2010 개정에서 전통적으로 위험이전 기준점으로 쓰이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품이 선박에 적재(on board)되는 시점을 인도시점으로 규정한다. 이는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을 넘나든다는 낡은 이미지 대신 실제 상관행에 맞춘 개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shipment / carriers / FCA / premises: ㄴ이 carriers(운송인)로 되어 있으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은 목적지가 운송인이 아니라 항구(ports)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틀렸다. FCA도 이 그룹이 아니라 모든 운송방식에 쓰는 규칙에 속하므로 틀렸다.
② delivery / carriers / FCA / premises: ㄱ은 맞으나 ㄴ이 carriers로 틀렸고, ㄷ의 FCA도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이 아니라 모든 운송방식 규칙에 속하므로 틀렸다.
③ shipment / ports / FAS / ship's rail: ㄴ, ㄷ, ㄹ은 맞으나 ㄱ이 shipment(선적)로 되어 있다. 원문은 물품의 인도지점(point of delivery)을 가리키므로 shipment가 아니라 delivery가 되어야 한다. 인도지점이 곧 선적항이 되는 결과는 맞지만, 빈칸에 들어갈 용어 자체는 delivery이므로 틀렸다.
④ delivery / ports / FAS / ship's rail: ㄱ은 인도지점(point of delivery), ㄴ은 그 지점과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목적지가 모두 항구(ports)라는 뜻이며, ㄷ은 이 그룹에 속하는 네 규칙 중 FOB, CFR, CIF와 함께 나열된 FAS이다. ㄹ은 FOB, CFR, CIF 세 규칙에서 삭제된 전통적 인도기준인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가리킨다. 네 용어 모두 올바르게 대응하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shipment(선적)와 delivery(인도)를 혼동하기 쉽다. Incoterms에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기준점을 가리킬 때는 항상 인도(delivery) 개념을 쓰고, 그 인도지점이 결과적으로 선적항이 되는 것일 뿐 빈칸 자체의 용어는 delivery이다. 또한 FCA는 모든 운송방식에 쓰는 규칙 그룹에 속하므로,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그룹(FAS, FOB, CFR, CIF)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항구(ports)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운송수단이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FAS, FOB, CFR, CIF) 그룹을 묻는 문제로 판단한다. 이어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전통적 표현이 등장하면 이는 Incoterms 2010에서 삭제되고 '적재(on board)' 개념으로 대체된 부분을 묻는 것으로 연결 지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 FAS, FOB, CFR, CIF, 네 규칙 모두 인도지점과 목적지가 항구. Incoterms 2010에서 FOB, CFR, CIF는 본선의 난간(ship's rail) 표현을 삭제하고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을 인도시점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8.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성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이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의 법적 성격을 선하증권(B/L)과 비교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AWB가 유통성(양도성)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달리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배서나 인도로 권리가 이전되는 유통성이 없으며, 처음부터 수하인을 지정하는 기명식(non-negotiable, straight consigned)으로만 발행된다. 따라서 AWB 자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배서 양도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없고, 화물을 인도받으려면 원본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본인이 화물을 인수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항공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상의 증명 기능을 한다.
② 옳지 않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성이 없는 비유통 증권이다. → 배서·인도로 양도되는 유통성 유가증권은 선하증권(B/L)의 특징이며, AWB는 이러한 유통성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옳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접수했음을 나타내는 영수증의 기능을 한다.
④ 옳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수하인을 미리 지정하여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 점이 지시식·무기명식 발행이 가능한 선하증권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AWB와 B/L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B/L은 유통성 유가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되고 물권적 효력을 가지지만, AWB는 단순한 운송계약의 증거·화물수령증에 불과하며 유통성이 없는 기명식 서류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유통성', '유가증권', '양도', '지시식'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AWB인지 B/L인지를 확인한다. AWB는 항상 비유통성·기명식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바로 풀린다.

암기 포인트

항공화물운송장(AWB) = 운송계약의 증명 + 화물수령증 + 기명식·비유통성. 선하증권(B/L) = 권리증권 + 유통성 유가증권 + 지시식·무기명식 가능. 이 대비 구도로 묶어서 외워 둔다.

NoteBase

문 19. 무역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은(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에 (㉢)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지정은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① ㉠ CWO, ㉡ 수출지, ㉢ 매수인
② ㉠ CAD, ㉡ 수출지, ㉢ 매수인
③ ㉠ COD, ㉡ 수입지, ㉢ 매도인
④ ㉠ OA, ㉡ 수입지, ㉢ 매도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무신용장 방식(추심 및 서류상환 계열) 대금결제 방법의 명칭과 그 작동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에 들어갈 결제방식이 '선적서류(선하증권 포함)와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그 방식이 성립하려면 ㉡ 쪽에 ㉢의 지점·대리인·지정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방식)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뒤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수출지에서 수입자 측 지점,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은행에 제시하고 그 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용장 없이 서류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수출지에 수입자(매수인)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지정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COD(Cash On Delivery, 현물상환방식)는 물품이 목적지(통상 수입지)에 도착한 뒤 수입자가 물품 자체를 검사·인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아닌 물품과 대금을 맞바꾼다. CWO(Cash With Order)는 주문과 동시에 선지급하는 방식이고, OA(Open Account, 청산계정)는 물품을 먼저 선적·인도한 뒤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CWO, 수출지, 매수인 → X: CWO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라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는 구조와 맞지 않는다.
② CAD, 수출지, 매수인 → O: CAD는 선하증권 포함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이 서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수출지이고 그곳에 매수인(수입자)의 지점·대리인·지정은행이 있어야 한다.
③ COD, 수입지, 매도인 → X: COD는 서류가 아니라 물품 인도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물품 인도는 수입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서류상환방식이 아니어서 지문의 설명과 다르다. 또한 지문의 구조상 필요한 지점·대리인은 매수인 측이지 매도인 측이 아니다.
④ OA, 수입지, 매도인 → X: OA는 물품을 먼저 선적·인도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지급(외상)방식으로,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COD와 CAD를 혼동하기 쉬운데, 교환의 대상이 '서류'인지 '물품'인지로 구분해야 한다. CAD는 선적서류(선하증권 포함)와 대금을 교환하고, COD는 실제 물품과 대금을 교환한다. 또 지문의 지점·대리인·지정은행이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읽으면 ③·④처럼 수입지·매도인으로 바꿔치기한 오답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교환 대상이 '선적서류(B/L 포함)'로 명시되어 있으면 CAD, '물품 자체'로 명시되어 있으면 COD로 즉시 구분한다. 이어서 서류 교환·확인 장소가 수출지인지 수입지인지, 그리고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지점·대리인이 매도인 것인지 매수인 것인지를 지문 문장 순서 그대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CAD=서류(Documents)와 교환, 수출지에 매수인 측 지점·대리인·지정은행 필요. COD=물품(Delivery)과 교환, 수입지에서 물품 인도. CWO=주문 시 선지급. OA=선인도 후 사후정산(외상).

NoteBase

문 20.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의 부담이다.

② 신용장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③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더라도 신용장은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

④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기 위해서는 ‘assignable’, ‘divisible’ 등의 용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UCP 600 제38조(양도가능신용장)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특히 분할양도의 허용 요건(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을 정반대로 서술한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풀이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제1수익자(원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 권한을 특정하여 부여받아 양도하는 은행이다.
제1수익자: 원신용장의 수익자로 양도를 지시하는 자. 제2수익자: 신용장이 양도된 상대방 수익자이다.

핵심 구분

분할양도 가능 여부는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의 허용 여부로 갈린다. 분할선적·분할어음이 허용되면 →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 금지되면 → 분할 양도 '불가'. UCP 600 제38조(d)는 분할선적·분할어음이 허용되는 한 신용장을 1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양도비용(수수료·요금·비용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제38조 c항). 옳은 설명이다.
② O: 양도은행은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8조 b항). 옳은 설명이다.
③ X: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더라도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 → 분할선적·분할어음 발행이 허용되면 오히려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제38조 d항)로 고쳐야 한다. 허용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양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불가하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다.
④ O: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려면 반드시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assignable', 'divisible' 같은 다른 표현으로는 양도가능신용장이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을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분할'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신용장은 원래 한 사람에게만 양도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할선적·분할어음이 허용되는 조건에서는 여러 제2수익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UCP 600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다. 이 선지는 규정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도가능신용장 문제에서 '분할 양도'가 나오면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 허용'이라는 전제가 붙었는지 확인한다. 그 전제가 붙어 있는데 '분할 양도 불가'라고 서술했다면 그 선지가 틀린 것이다. 비용 부담(제1수익자)·개설은행의 양도은행 가능성·'transferable' 명시 요건은 옳은 진술로 반복 출제되는 정답 후보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UCP 600 제38조 핵심: 양도비용은 제1수익자 부담(별도 합의 없으면), 개설은행도 양도은행 가능, 분할선적·분할어음이 허용되면 2인 이상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가능, 양도가능 표시는 오직 'transferable'만 인정('assignable'·'divisible'은 불인정).

NoteBase